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4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5월 25일
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영희, 김소양, 오중석,
이종환, 이준형, 이태성,
이호대, 전석기, 채인묵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저층주택이 밀집한 고밀 저층주거지의 경우 생활기반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.
- 이에,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커 공급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공급 우선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저층주거지도 우선 공급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(안 제6조제2항제 6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6조(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